가칭 가정폭력방지법 안

작성자 : 이 찬 진(변호사)

제1장 총 칙(제1조 - 제3조)
제2장 가정보호사건
제3장 형사특별절차
제4장 벌 칙
제5장 부 칙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 적)

이 법은 가정폭력의 예방 및 관련 당사자들의 치료,지원을 국가적으로 지원하고, 가정폭력 사건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건전한 가정을 보호,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가정의 보호 및 유지 책임

1항 국가와 국민은 건전한 가정과 가족제도가 유지,발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의 방지를 위한 예방교육·상담, 폭력발생시의 피해자에 대한 피난처와 위기개입 및 지원서비스의 제공, 가해자에

대한 치료서비스의 제공 등을 통한 가정폭력의 확대방지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의 개발 등의 복지서비스 등 법적,제도적 장치의 제공과 이에 수반되는 예산을 확보할 책임을 진다.

3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초자치단체이하의 행정기관 경찰관서에 해당 직제를 설치하고 전문공무원을 육성,배치하여야 한다.

4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시 관련 민간 시설 및 법인에 예산지원을 할 수 있다.

제 3 조 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정폭력 이라 함은 가족 또는 세대구성원 사이의 육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를 수반하는 형법상의 고의에 의한 범죄행위를 말한다.

2. 가족 또는 세대구성원 이라함은 다음과 같은 관계가 있는 상호간을 말한다.

가. 법률상 배우자 및 전배우자

나. 사실혼 관계자 및 종전 관계자

다. 법률상 직계비속 관계가 인정되는 자녀를 둔 각 당사자

라. 부부의 일방과 직계비속 관계인 자녀가 있는 경우의 각 당사자

마. 기타 동거친족 상호간

3. 가정보호처분 이라함은 가정폭력사건을 관할하는 법원이 가정폭력사건에 관하여 심리,결정하여 발부하는 가해자에 대한 각종의 부작위 및 이행명령 등을 말한다.

제4조 보호사건 전치주의

가정폭력사건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장 소정의 가정보호 사건심리를 거쳐 가정보호사건담당판사의 검찰송치결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일반형사 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단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행위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게기된 각 형법상의 죄(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포함한다.)를 3회 이상 야기한 자의 범죄행위

제 2 장 가 정 보 호 사 건

제5조 관할, 직능

제1항 가정보호사건의 관할은 가해자의 행위자, 거주지 또는 현재지로 한다.

제2항 가정보호사건은 가정법원 가사부 또는 지방법원 가사부 또는 시,군판사에 속한다.

제3항 가정보호사건의 심리와 처분의 결정은 가사부단독판사 또는가 행한다.

제6조 가정폭력사건에 관한 사법경찰관의 직무

가정폭력사건에 관한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6시간 이내에 사건현장에 출동하여 가해자 및 피해자에 관한 진술조서 및 현장검증조서의 작성과

가정상황 및 피해상황에 대한 증거수집 등을 실시하고, 관할 경찰서장은 신고접수시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관할 가사부 단독법관에게 그 사건기록 일체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7조 피해자의 권리

피해자는 보호사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에 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담당법관은 보호처분 결정시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제8조 임시조치

제1항 담당 법관은 기록을 송치받은 후 48시간 이내에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동행영장을 발부하여 동행된 가해자에 대하여 24시간 이내에 사건의 조사,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1. 가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적당한 시설에 위탁하는 것
2. 병원 기타 요양소에 위탁하는 것
3. 관할 구치소 및 유치장에 유치하는 것

제2항 위 제1항 중 1,2호의 위탁기간은 20일을, 3호의 위탁기간은 1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3항 가사부법관은 제1항 제1호, 제2호의 조치를 할 때에는 보호자 또는 수탁자에게 가해자 감호에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보호자 또는 수탁자

의 신분에 관하여는 가해자에 대한 감호기간 중 공무원으로 본다.

제4항 가사부법관은 제1항 각호의 결정을 한 때에는 가사부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법원주사보, 교도소 및 구치소 소속공무원 또는 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그 결정을 집행하게 할 수 있다.

제5항 가사부법관은 제1항의 조치를 언제든지 결정으로써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제9조

사건의 조사·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1996. 2. 3. 가정폭력방지법안 준비모임

1. 토의 결과

가. 수사의 강제성, 효율성을 고려하여 기존의 형사절차를 최대한 이용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한다.

나. 당사자의 절차 선택권 내지 처분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한다.

다. 사법경찰권이 발동되는 경우와 당사자의 임의적인 신청에 의한 가정보호사건을 궁극적으로 동일한 절차에서 진행되도록 한다.

라. 구금기간은 그 어느 경우에도 최소화한다.

마. 일반형사절차이든, 가정보호사건절차 과정이든 당사자의 합의 등에 의한 신병석방에 관하여는 최대한 보장한다.

2. 세 부 내용

가. 사법경찰권이 발동되는 여하한 경우- 즉, 수사개시시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 기존의 성안된 조항을 정리한다. -
-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처벌조항을 벌칙 장에서 둔다.

나. 피의자의 신병을 구속하지 않거나 석방할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즉시 피의자로 하여금 피해자에 대하여 다음 항목의 내용을 한도로 하는 접근 금지 또는 주거지 제한에 관한 보증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당해 내용은 추후 논의, 정리한다.)
-- 일정한 접근금지 또는 주거지 제한에 관한 보증위반시 제재조항을 고려하고, 예컨대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 양형에 필요적으로 참작한다는 등의 조항.

다. 불구속사건은 필요적으로 가사부송치결정을 하여야 한다. 단, 경찰서장이 위 처분을 할 경우에는 담당 검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고려사항- 친고죄,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고소가 없거나, 합의되었을 경우 기존의 공소권없음 결정을 할 것인지 아니면 가사부송치결정을 유지할 것인지 여부

라. 필요적 가사부송치의 경우

구속사건 중 장기 년 이하의 법정형에 해당하고, 해당사건 이전 5?년이내에 가정폭력사건의 전력이 없는 경우 경찰서장, 검사 ---- 는 양당사자가 공동으로 가사부 이송신청을 할 경우 --- 일 이내에 가사부송치결정을 하여야 한다.

(경찰서장은 -- 즉시 승인을 받아야한다.--)

마. 직권에 의한 경우

검사, 1,2심 법관은 조사 및 심리결과 일반형사절차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직권으로 가사부송치결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피해자의 의견을 참조하여야 한다.

단, 가정폭력 동종사건으로 회? 이상을 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가정보호사건에 있어서의 원칙

가. 가정보호처분 절차 및 처분을 포함하여 구금기간은 최장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구금처분을 결정할 경우에는 일반형사구금기간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경우 보조인의 자격을 폭넓게 인정한다.(변호사, 4촌 이내의 친족 중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 전문 상담기관의 --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다. 가정보호처분에서 구금결정을 하는 경우를 최대한 제한한다.

가령 몇회 이상의 가정폭력사건 전력이 있다든지, 몇년이상의 중폭행을 하였다든지 하는 경우에만 - 이 경우에는 극히 예외적으로 형사이송처분을 하여 일반형사절차로 보낼 수 있는 조항을 둔다.